

## 11. 住居環境改善地區 10곳 새로 指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-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.  
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,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,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.
-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'92. 4.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(주거환경 개선지구)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.
- 정부는 '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“달 동네”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.

## 거주환경개선지구 10곳 새로 지정

- '92. 4. 14 건설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6개시 10개지구(면적 461,634㎡, 주택수 2,662호)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다.  
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사업시행자인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이 당해 지구의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대로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게 된다.
-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 사업은 소방도로, 상·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주민의 희망에 따라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 
이때, 정부에는 호당 1,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 국공유지불하 등 각종 지원을 하게 된다.
- 정부는 지금까지 전국 199개 지구(8,328천㎡, 68천호)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였는 바, 이중 개선계획이 확정된 19개시 73개 지구(29천호)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 
개선계획 수립중에 있는 나머지 126개 지구(39천호)도 지구별로 계획이 확정되는데로 속속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.
- 도시저소득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”에 따라 시행되며  
정부는 '99년까지 전국의 불량주택밀집지역 502개 지구(163천호)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.

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

'92. 4. 14

시·도	지 구 명	위        치	면   적 (㎡)	주택수 (동)	가구수 (세대)
계	10개지구		461,634	2,662	4,626
광명시 (경기)	철산	광명시 철산동 501번지 일원	58,040	380	1,294
원주시 (강원)	향교	원주시 명륜동 259 "	55,549	278	434
논산군 (충남)	관촉	논산군 논산읍 관촉리 240 "	48,479	89	112
전주시 (전북)	보문	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171 "	43,691	234	455
나주시 (전남)	영산	나주시 영산동 162-2 "	31,000	123	267
목포시 (전남)	산정4	목포시 산정동 154 "	39,389	173	256
	산정5	목포시 산정동 13 "	51,680	341	517
	만호	목포시 만호동 1 "	23,862	202	234
	이노1	목포시 용해동 518 "	27,323	61	79
	서산	목포시 서산동 4 "	82,621	781	978

##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

### 1. 추진 배경

-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불비하고 도시계획 및 건축기준 등에 맞지 않아 주택을 개량할 수 없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
- '89. 4. 1 의원입법으로 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”을 제정('99년까지 한시법)

### 2. 사업 개요

- 도시영세민이 기존의 생활터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을 현지에 정착시키면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주택개량 등을 추진
  - 주택개량(주민·지자체·주공)
    - 주민 희망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 건설
    - 주택개량자금 융자
      - 재특 : 호당 300만원, 연리 6% 1년거치 19년상환
      - 기금 : 호당 1,100만원, 연리 10% 1년거치 19년상환
      - 계 : 호당 1,400만원(단, 전용면적 50㎡ 초과는 1,200만원까지)
    -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및 국·공유지 불하
    - 건폐율·용적율 등 건축규제 완화
  - 도로·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정비(지자체)
    - 소요재원은 재특(내무부) 및 지방비로 충당

### 3. 추진 현황

'92 계획

추진 현황

대상지구
502개지구 (163천호)

- ⇒ '89년부터 사업준비 시작
- 법령과 조례를 제정
  - 대상지구를 조사하여 전국 502개지구(163천호) 선정
- 지자체별로 사업지구입안·주민동의 등 필요절차에 착수



지구지정
220개지구 (76천호)

- ⇒ '90년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
- '91말까지 170개지구(61천호)
  - '92. 4 29개지구(7천호)
- 계 199개지구(68천호) 지구지정 완료
- '92년중 21개지구(8천호) 추가로 지구지정



계획수립
140개지구 (49천호)

- ⇒ '91년부터 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인  
거주환경개선계획 수립(시장·군수)
- '91말까지 60개지구(23천호)
  - '92. 4 35개지구(9천호)
- 계 85개지구(32천호) 계획수립 완료
- '92년중 55개지구(17천호) 추가로 계획수립



사업시행
100개지구 (35천호)

- ⇒ '9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활발히 진행중
- '91말까지 60개지구(23천호)
  - '92. 4 13개지구(6천호)
- 계 73개지구(29천호) 사업시행중
- '92년중 27개지구(6천호) 추가로 사업착수

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

'92. 4. 현재

시·도	대상지구		지정지구		사업시행	
	지구수	주택수 (천호)	지구수	주택수 (천호)	지구수	주택수 (천호)
총 계	502	163	199	68	73	29
서울	87	23	50	13	21	7
부산	101	46	18	19	10	9
대구	46	20	19	8	9	4
인천	38	11	17	4	7	1
광주	14	5	5	1	3	1
대전	16	5	5	2	2	1
경기	35	12	21	6	5	2
강원	22	7	7	1	2	0.3
충북	14	3	6	1	0	0
충남	2	0.5	2	0.5	0	0
전북	28	6	10	2	2	0.6
전남	39	11	20	6	3	1
경북	19	3	4	1	2	0.2
경남	40	10	14	4	7	2
제주	1	0.1	1	0.1	0	0